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이하 "PSC"라 한다) 교량공사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PSC 교량공사의 PSC거더 제작, 운반, 가설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PSC거더(Prestressed concrete girder)" 라 함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부재내의 인장응력에 대응하여 PS강재를 사용하여 미리 부재내에 압축 응력을 가하여 줌으로써 외력에 대응토록 하는 원리로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말한다.
 - (나) "PS강재"라 함은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한 고강도 강재를 말한다.
 - (다) "쉬스(Sheath)관" 이라 함은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S강재의 배치구 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미리 배치된 관을 말한다.
 - (라) "해체작업대"라 함은 PSC 교량공사 현장에서 슬래브 거푸집 해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사용되는 건설장비의 일종으로서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작업대를 매달아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PSC거더 제작장 선정 시 안전조치 사항

- (1) PSC거더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제작장의 지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제작된 PSC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 (4) 홍수위(H.W.L) 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5) 풍수해의 영향, 지하매설물의 유무, 공사에 의한 공해 등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PSC거더 제작대 설치시 안전조치 사항

- (1) 제작대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제작대는 지면 보다 높게 설치하여 작업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 해 체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거더가 전도될 경우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또는 거더간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제작된 순서대로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PS강재 긴장작업 시에는 침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 대를 견고히 해야 하며 보의 자중과 철재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조립

KOSHA Code C-6-2004 콘크리트공사의 표준안전작업지침의 5. 철근공사에 따른다.

7. 쉬스관 및 강재 배치

- (1) PS강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2) 모든 쉬스관 및 정착장치는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그라우트를 주입할 수 있도록 파이프 또는 적절한 기타 연결부를 갖추어 조립하고 이동이 없도록 안전하게 제자리에 정착하여야 한다.
- (3) 쉬스판과 거푸집과의 접촉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간격재는 승인된 모양과 치수의 프리캐스트 모르터 블럭이어야 하며, 쉬스판과 쉬스판 사이에는 모르터 블록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로 된 간격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4) 포스트 텐션 부재를 제작하여 장기간 인장과 그라우팅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PS강재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가공선로에 대한 감전재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정착구의 지압면은 PS강재의 축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KOSHA Code C-6-2004 콘크리트공사의 표준안전작업지침의 4.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공사 및 6.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따른다.

9. 양생관리

- (1) 급열 양생 시에는 산소결핍증의 방지 및 일산화탄소 중독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양생쉬트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만약 들어가는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조치 후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 (2) 양생작업 시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근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PSC거더 긴장 시 주의사항

- (1) 인장장치 후방에는 인장력의 최대반력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한 PSC거더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긴장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4) 긴장장치 배면에서의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5) 긴장 작업 시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 (6) 우천 시 작업할 경우는 쉬트 등으로 덮거나 지붕을 설치하여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운반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OSHA GUIDE

C - 41 - 2011

- (1) 제작된 부재를 보관, 인양 등 취급시에는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2) PSC거더의 보관 시에는 받침대를 견고히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운반작업 전에 정격하중, 적재 길이의 확보 및 선회반경 등에 대해 외부사람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5) 부재를 싣고 내리는 장소의 지반은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6) 운반로는 충분한 지내력과 적절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 (7) 운반로로 공공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사정, 교통상의 제약조건에 관해서 사전 조사하여야 한다.
- (8) 트레일러 또는 트럭 위의 PSC거더에 대해서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PSC거더 가설 시 안전조치사항

12.1 공통사항

- (1)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작업장 내 고압 송전선로, 전기·통신케이블 등 장애물 현황을 사전에 조사 하여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갖추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하여 작업배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KOSHA GUIDE

C - 41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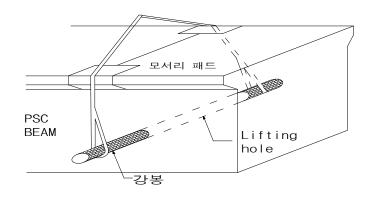
- (4)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 전에 보호구의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작업 중에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사용예정 장비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적인 장비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 (6) 위험기계 · 기구의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7)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8) 공사차량의 출입로를 확보하고 차량유도계획을 수립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 작업장 내 공구 및 자재를 정리정돈하여 낙하·비래 등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10) 중량물 부품을 운반하여 지면에 임시 적재할 때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괴고 균형을 맞추어 적재하여야 한다.

12.2 거치 작업전 준비사항

- (1) 작업반경, 안전한 인양 하중범위 등을 고려하여 양중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크레인 2대로 동시에 인양할 때에는 크레인의 정격용량 및 설치위치, 인양 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PSC거더 위에 안전난간은 거치하기 전에 지상에서 조립하여야 한다.
- (4) PSC거더 상부에 통로용 발판을 고정 설치한다.
- (5) 양중기 작업장 및 통로는 평탄성과 다짐상태를 확인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치환 후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철판 등을 설치하여 침하에 대비하여야 한다.

12.3 PSC거더 거치 시 안전조치사항

- (1) 하부 작업범위 내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경계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2) 작업순서, 작업방법, 신호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작업 양중기 운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거치 작업 전 아래내용이 포함된 양중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 훅 해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의 손상유무
- (나) 경보장치. 브레이크 작동상태
- (다) 와이어로프 결손상태, 클립체결상태 등
- (4) 양중기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부착된 모멘트 리미트(Moment limit)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제작장에서 트레일러 위에 PSC거더를 상차하는 경우 운전원은 트레일러에 고정완료 될 때까지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운반용 트레일러 위의 PSC거더 고정조치는 양중기의 인양로프를 결속한 후에 해제하여야 한다.
- (7) PSC거더의 인양시 <그림 1>과 같이 PSC거더의 리프팅 홀에 강봉을 삽입하고 상부 모서리에 패드 등으로 보호조치 후 와이어로프로 인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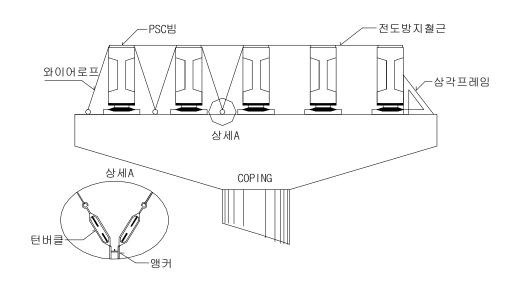


<그림 1> PSC거더 인양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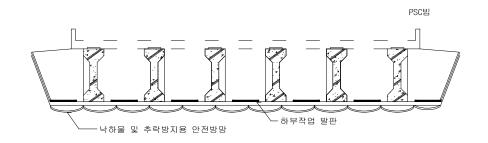
- (8) 두 대의 양중기를 이용하여 PSC거더 인양시 수평을 유지하며 서서히 인양 하여야 한다.
- (9) 양중기 운전은 면허 소지자가 하여야 하며 자재를 매단체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양중작업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11) 풍속이 10분간 계속하여 10m/sec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2.4 PSC거더 거치 후 안전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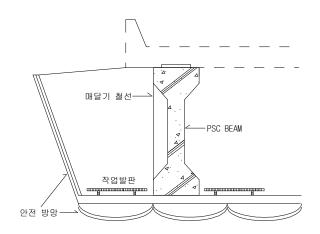
- (1) 각각의 PSC거더 거치 즉시 <그림 2>와 같이 코핑상부에 매립된 고리에 턴버클로 와이어로프를 긴장하여 고정하고 삼각 프레임과 받침쐐기 등을 설치하여 PSC거더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한경간의 PSC거더 설치완료 후 PSC거더 하부에는 <그림 3>, <그림 4>와 같이 낙하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그림 2> PSC거더 전도방지 설치 예(단면도)



<그림 3> 낙하 및 추락방지망 설치 예



<그림 4> 낙하 및 추락방지망 설치 상세도

- (3) PSC거더 상부의 돌출철근에 철근(ø25)을 5m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용접하여 고정 하여야 한다.
- (4) PSC거더 위의 작업자는 안전난간에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 (5) PSC거더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움직임이 없도록 철저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6) PSC거더 하부가 도로나 작업장일 경우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 치하여야 한다.

(7) PSC거더 전체가 결속된 상태로 설치된 후 거더 하부에 고정시킨 쐐기와 버팀목을 빼고 슈(Shoe) 용접을 하여야 한다.

13. 해체작업대를 이용한 PSC교량 슬래브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 (1) 작업 중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한다.
- (2) 부재 변형여부 및 연결부, 접속부 이상 유무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턴테이블 회전 베어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작업대 연결볼트 및 각 연결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턴테이블 체결볼트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5) 하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상ㆍ하 이동용 사다리 및 등받이를 설치하고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7) 레일 클램프(Rail clamp)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이격발생시 교체하여야 한다.
- (8) 작업대 사용 전 시험작동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9) 지브(Jib) 크레인 사용 전 시험작동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0) 작업시작 전에 작업대의 작업방법, 이용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